

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1. 2. 5.>

(앞 쪽)

임시운행허가증			
자동차 사용자	성명 (명칭)		
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등록번호)	
	주소		
허가번호		허가기간	
차명		차대번호	
운행목적			
운행구간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임시운행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(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)			

인

33331-01911일

96.10.4 승인

182mm×128mm

(보존용지(2종) 70g/m²)

(뒤 쪽)

소유자의 주의사항

1. 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.
2.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관청(신규등록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등록지 관할관청)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3. 자동차임시운행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,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3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2호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비고

1. 재질은 접착식으로 합니다.
2. 접착제는 앞면 실선 바깥부분에만 칠합니다.